

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

제2차 본회의 2007. 5. 2(수)

# 조례안 심사보고서

거창군의회  
(산업건설위원회)

## 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 
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2
2.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6
3.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16

#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4월 23일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2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5월 1일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6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림환경과장 이 희성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『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』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
-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자를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”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정함(안 제2조제2호)

-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(주로 다류·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는 영업을 제외)
- 일반음식점영업(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,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)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#### 가. 본 조례안은

-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
- 2005. 12. 30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으로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

- 안 제2조(정의) 제2호에서 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」 제9조의2 제2호를 검토한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의 영업장 기준면적을 기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

일괄적인 면적 제시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한 입법취지를 볼 때,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.

- 개정안에서는 영업장의 면적을 기존 규칙에 규정한 것과 똑같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,
-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 군 관내 총업소수 1,132개 업소 중에서 8.9%인 101개 업소만 해당되며, 휴게음식점은 대상 업소가 1개소도 없는데 이렇게 규정해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면적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.

※ 관내 업소별 현황

구 분	총업소수	125m <sup>2</sup> 이상업소	비 율
계	1,132	101	8.9%
일반음식점	1,024	101	9.8%
휴게음식점	108	0	0%

- 한편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은 2005. 12. 30 개정되어 그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2007. 1. 1부터 시행토록 한 것으로 시행일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여,

- 이로 인해 감량화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음식점이 관련규정의 부재로 감량화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.
-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2006.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통보한 바 있으며,  
2007. 4.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상사업장 관련 조례 제·개정 촉구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늦어진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(「) 표시 등 자구를 정리한 사항이며, 지난 3. 26부터 4. 17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〔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4월 23일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2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5월 1일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7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건축과장 오 순 택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·공포되고
-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,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 변경 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(안 제1조 등)
-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
  -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(안 제32조 내지 안 제37조, 안 제43조, 안 제48조, 안 제49조, 안 제51조)
  -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(안 별표 1 내지 별표 23)
-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함(안 제73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### 가. 본 조례안은

-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. 5. 8, 2006. 8. 17 개정·공포되고,
-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,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

## 나.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

### 《안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관련하여》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모두 3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며 다만, 단서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·군 조례로써 규정토록 하고 있음.
  - 이는 허가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안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“5천 제곱미터”를 “1만 제곱미터”로, 생산관리지역은 “1만 제곱미터”를 “1만5천 제곱미터”로 상향 조정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.
- 관리지역을 보전, 생산,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입법취지와 다른 시·군의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(아래 표 참조)

**※ 19조 관련 시·군별 개발행위허가규모 규정 현황**

시군별	보전관리지역	생산관리지역	계획관리지역	농림지역	비고
창원시	5천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
함안군	5천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
남해군	1만 m <sup>2</sup>	2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2만 m <sup>2</sup>	
하동군	1만 m <sup>2</sup>	2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
함양군	5천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
산청군	5천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
합천군	1만 m <sup>2</sup>	2만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2만 m <sup>2</sup>	
거창군	1만 m <sup>2</sup>	1만5천 m <sup>2</sup>	3만 m <sup>2</sup>	1만 m <sup>2</sup>	개정안기준

**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발취**

**제36조 【용도지역의 지정】**

1. 도시지역 :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2. 관리지역 :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  - 가. 보전관리지역 : 자연환경보호, 산림보호, 수질오염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  - 나. 생산관리지역 : 농업·임업·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  - 다. 계획관리지역 :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·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3. 농림지역 , 4. 자연환경보전지역

○ 먼저, 종전의 관리지역을 보전, 생산,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용도를 보면(법률 제36조 참조)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수준의 지역이며,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허가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야 바람직할 것임.

-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은 1만 5천 제곱미터로 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○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5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허가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때, 보다 신중하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### 안 제19조 수정의견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9조(개발행위허가의 규모) (생 략)	제19조(개발행위허가의 규모) (현행과 같음)	제19조(개발행위허가의 규모) (현행과 같음)
1. 보전관리지역 : <u>5천제곱미터</u> 미만	1. 보전관리지역 : <u>1만 제곱미터</u> 미만	1. 보전관리지역 : <u>5천 제곱미터</u> 미만
2. 생산관리지역 : <u>1만제곱미터</u> 미만	2. 생산관리지역 : <u>1만5천 제곱미터</u> 미만	2. 생산관리지역 : <u>2만 제곱미터</u> 미만
3. 계획관리지역 : <u>3만제곱미터</u> 미만	3. 현행과 같음	3. 현행과 같음
4. 농림지역 : <u>1만제곱미터</u> 미만	4. 현행과 같음	4. 농림지역 : <u>2만 제곱미터</u> 미만

⇒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5천 제곱미터로 그대로 두고,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유치 등 개발 촉진을 위해서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《안 제28조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하여》

- 본 조례 제28조는 일정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자문을 받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으로써,
-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, 민원처리의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이는 감사원의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며, 다른 시·군에서도 조례개정 시 모두 삭제한 내용임.

안 제28조 수정의견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8조(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경상도 <b>20퍼센트</b> 이상 인 토지의 개발행위	제28조(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.... <u>18도</u> ..... .....	제28조 <삭제>

《 안 제73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》

-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·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에 대하여 「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《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》
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하였으며,
-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다. 마지막으로
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, 2007. 4. 19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## 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자 : 이 창 도의원

나. 수정이유

- 안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, 민원처리의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다. 수정내용

- 안 제28조 삭제

## 7. 심사 결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8조를 삭제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28조(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)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 경사도 <u>20퍼센트</u> 이상 인 토지의 개발행위	제28조(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.... <u>18도</u> ..... .....	제28조 <삭 제>



#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4월 23일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2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5월 1일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8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종 연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통합방위법」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(‘06.5.30)개정에 따라 “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”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, 전·평시 작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각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는 등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와 상위법 개정으로 중복내용을 삭제함(안 제2조)

-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거창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(안 제3조 제2항)
- 상위법 개정으로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함 (안 제4조 제6항) - 총괄지원반 등 7개반
-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정비(안 제 5조 제2항) - “이동식 장애물”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기타 조문의 신설 및 삭제로 체계에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재배열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#### 가. 본 조례안은
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거창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 위촉과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추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

#### 나.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

- 안 제2조(심의사항)에서 “제1항 통합방위대비책”과 제 3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”의 신설은 상위법인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에서 정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정비한 사항이며,

심의사항 중 “취약지역대비책”의 삭제는 법 제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“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”에 포함되어 운영할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- 안 제4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제6항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변경은, 「통합방위법시행령」 제14조 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”에 의거 유사 지원반의 통폐합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, 바람직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5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제2항은 「통합방위법시행령」 제28조(취약지역대비책 기준 개선)에 근거하여 “이동식 장애물”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다. 따라서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 요지 : 생략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